

법인직원징계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 제93조에 의하여 본 법인에 설치한 직원징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은 교원, 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가 임명한다. 다만,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

제5조(소집과 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징계의결의 요구 등) ①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임명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(별지서식 제1호)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통지서(별지서식 제2호)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징계의결의 기한) 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(별지서식 제1호)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8조(제척)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9조(기피 등) ①징계대상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1-1-4~2 제1편 법 인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10조(임시위원의 임명)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11조(진상조사 및 의견진술) ①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징계의결)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(별지서식 제3호)를 작성하고 이를 즉시 임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.

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(별지서식 제4호)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상참작 등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징계사유의 시효)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 다만,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사안은 예외로 한다.

제15조(재심청구) ①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재심청구는 징계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간사 등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

인을 둘 수 있다.

②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.

제1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